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35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892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35311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동현, 최성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윤서, 정원진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12. 28. 접수 제256566호, 2015. 12. 30. 접수 제25788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사장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의 회장이다. 원고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데, 망인은 2018. 1. 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5, 8, 9, 10, 12, 13, 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1. 8. 6. 접수 제25673호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15. 접수 제25057호로, 별지 목록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15. 접수 제25058호로, 별지 목록 제7항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15. 접수 제25059호로, 별지 목록 제2, 3, 4, 15, 1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4. 접수 제177619호로, 별지 목록 제11, 17 내지 40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31. 접수 제4243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12. 28. 접수 제256566호 내지 2015. 12. 30. 접수 제257888호로 2015. 1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5. 12. 28.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여버리겠다. 원고의 재산을 다 빼앗겠다. 원고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집안과 회사경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취지의 재산적·비재산적 해악을 고지하였고, 망인을 설득하려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원고의 몸을 힘으로 밀치기도 하는 등 신체적인 유형력 또한 행사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망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망인은 원고 및 원고의 주변인들에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면, 추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치 이상의 반대급부를 챙겨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고, 피고도 위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해주면 네가 손해보는 것은 내가 막겠다. 원원하자.'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후 망인은 원고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주지 않았고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다른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해주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망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2020. 11. 4.자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로써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4,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공포심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2015. 12. 28.)과 근접한 시점인 2015. 4. 30. 기준으로 원고가 사장으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지분율은 원고 46%, F 7%, D 주식회사 47%였고, 2015. 12. 31. 기준으로 D 주식회사의 지분율은 피고 33.48%, 원고 9.42%, 망인 0.48%였다. 위와 같은 지분율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단독으로 C 주식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3. 12. 4. 별지 목록 제2, 3, 4, 15, 16항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04. 3. 31. 별지 목록 제11항 부동산을 원 · 피고의 다른 형제인 G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증여 과정은 망인이 제안하였다는 점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도 망인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③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주식을 비롯하여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바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5. 11. 11. 원고의 자녀인 H에게 1,000,000,000원을 증여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망인이 문힐 묘소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며 묘지 공사 견적서, 공사비 이체 자료, 묘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형제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한 바 있는 망인이 자신이 문힐 묘소를 만들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이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기만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 및 원고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반대급부로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김서현, 판사 김승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지번	구분	면적(m)
1	용인시 처인구 I	전	714
2	용인시 처인구 J	대	826
3	용인시 처인구 K	목장용지	2,314
4	용인시 처인구 L	도로	192
5	용인시 처인구 M	대	440
6	용인시 처인구 N	전	873
7	용인시 처인구 O	전	333
8	용인시 처인구 P	대	644
9	용인시 처인구 Q	도로	903
10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16,245
11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17,906
12	용인시 처인구 T	임야	2,914
13	용인시 처인구 U	임야	1,399
14	용인시 처인구 V ¹⁾	임야	8,371
15	용인시 처인구 W	임야	700
16	용인시 처인구 X	임야	33,685
17	용인시 처인구 Y	임야	990
18	용인시 처인구 Z	임야	990
19	용인시 처인구 AA	임야	990
20	용인시 처인구 AB	임야	990
21	용인시 처인구 AC	임야	990
22	용인시 처인구 AD	임야	990
23	용인시 처인구 AE	임야	990
24	용인시 처인구 AF	임야	990
25	용인시 처인구 AG	임야	990
26	용인시 처인구 AH	임야	990
27	용인시 처인구 AI	임야	990
28	용인시 처인구 AJ	임야	990
29	용인시 처인구 AK	임야	990
30	용인시 처인구 AL	임야	990
31	용인시 처인구 AM	임야	990
32	용인시 처인구 AN	임야	990
33	용인시 처인구 AO	임야	101
34	용인시 처인구 AP	임야	990
35	용인시 처인구 AQ	임야	990
36	용인시 처인구 AR	임야	990
37	용인시 처인구 AS	임야	990
38	용인시 처인구 AT	임야	990

39	용인시 처인구 AU	임야	990
40	용인시 처인구 AV	임야	990

끝.

1) 용인시 처인구 V는 2017. 9. 6. AW 임야 8,437㎡로 등록전환되었고, 2017. 9. 11. AW 임야 중 375㎡ 부분이 AX로 분할되었다.